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(주식)

나. 변경 시행일 : 2010년 2월 24일 (수)

다. 변경 사유 및 내용:

[집합투자규약]
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[2009.12.21 시행, 제92조(자산운용보고서) 및 제 270조(자산보관·관리보고서)]에 따른 제50조(공시 및 보고서) 개정

구분	정정전	정정후		
	① ~ ⑥ (생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		
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		
	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	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		
عا) EO ح	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서면으로 우송</u>	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</u>		
제50조	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	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		
(공시 및 보고서 등)	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	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		
\o)	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	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		
		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		
		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		
		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	
[부칙]	<신 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0년 2월		
[24일부터 시행한다.		

[투자설명서]

-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(직전 회계년도 기준 : 2009.12.18)
- 작성기준일 변경(2009.9.28→2010.02.18)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, 자산운용회사 운용규모 등 관련 사항 개정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[2009.12.21 시행, 제92조(자산운용보고서) 및 제 270조(자산보관·관리보고서)]에 따른 반영
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[2010.1.1 시행]에 따른 과세에 관한 사항 반영
-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

구분	정정전	정정후	
[표지] 4. 작성기준일	2009년 9월 28일	2010년 2월 18일	
[표지] 5. 증권신고서 효력발생	2009년 10월 15일	2010년 2월 24일	
일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	<u>2009.10.</u> -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	<u>2009.10.15</u> -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	

사항 中 '2. 집합투자기구의 연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혁' 조항 개정 / - 법인세법시행령 개정

지행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문배 조항 개정 / -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에 따른 Class Af 수익증권 가입자 격 변경 / -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 한 소득세 감면사유 일부 수정 / -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(집합투자업 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, 운용규모 등) 개정 / -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 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개정 <신설>

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개정 / -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에 따른 Class Af 수익증권 가입자 격 변경 / -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 한 소득세 감면사유 일부 수정 / -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(집합투자업 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, 운용규모 등) 개정 / -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 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개정 2010.02.24 -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(직전 회계년도 기준 : 2009.12.18) / -작성기준일 변경(2009.9.28→ 2010.02.18)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, 자산운용회사 운용규모 등 관련 사항 개정 / -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[2009.12.21 시행, 제92조(자산운 용보고서) 및 제270조(자산보관・관 리보고서)]에 따른 반영 / -조세특례 제한법 개정[2010.1.1 시행] 사항 반영 / -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 증권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사항 반영

(2009.09.28 현재)

① 책임운용전문인력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5.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'

	성명	박찬		
	생년	1971		
	직위	팀장		
	운용중인			
	다른 집합	19개		
운용	투자기구	<u>1921</u>		
현황	수			
	다른 운용	10.0669		
	자산규모	<u>18,966억</u>		
주요	운용경력 및	<생략>		
	이력	\;\(\disp\)		

(2010.02.18 현재)

① 책임운용전문인력

	성명	박찬		
	생년	1971		
	직위	팀장		
	운용중인			
	다른 집합	107		
운용	투자기구	<u>19개</u>		
현황	수			
	다른 운용	10.0400		
	자산규모	<u>18,248억</u>		
주요	운용경력 및	<현행과 같음>		
	이력	·인정박 실금/		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', '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'	이 투자신탁의 Class C<장기주택마 런>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 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 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 택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 로 함)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 대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7 년 이상의 저축을 통하여 비과세 및 근로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 에게 적합합니다.	이 투자신탁의 Class C<장기주택마 런>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 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 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 택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 로 함)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 대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7 년 이상의 저축을 통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받고자 하 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', 가. 매입, (4). Class C<장기주 택마런> 수익증권의 주요 내용	<변경전1>	<u><변경후1>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', 나.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, ①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- 직전 회계연도 (2009.12.18) 기준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보수 및 비용[기타비용, 총보수•비용, 총보수•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), 증권거래비용] 갱신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', 나.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,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- 직전 회계연도 (2009.12.18) 기준 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[기타비용, 총보수 •비용, 총보수•비용, 증권거래비용] 갱신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', 나.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, <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、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- 직전 회계연도 (2009.12.18) 기준 으로 "이 집합투자기구에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 수료 및 보수비용의 예시" 갱신

(1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

- ①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 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.
- ②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

<그림1. 변경전>

③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. 다만, 해당 펀드가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

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.

(1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달이 없는 것이 원칙

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

<그림1. 변경후>

②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14. 이익 배분 및 과 세에 관한 사항', '나. 과세'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권거 래세, 취득세, 등록세 등의 면 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 다.

④ 그러나,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 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 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<삭 제>

사유 :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일몰

[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]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 족해야 합니다.

 가.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

 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

 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

 투자증권을 발행할 것

나.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30인을 초과할 것

다. 30인(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수)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

<삭 제>

사유 :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일몰

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: 원천징수 원칙

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.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 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

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: 원천징수원칙

<u><삭 제></u>

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,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.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, 집합투자업자•판매회사•한국금융투자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②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,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,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.

다만 해당 <u>투자신탁의</u>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KOSPI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(채 권 등 제외)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, 벤처기업의 주식 등 에서 발생하는 매매·평가 손익 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 니다.

(3) 과세상 수익자에게 불리한 사항

①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,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.

-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

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 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 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 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 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 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 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(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)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, 벤처기업 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•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•평 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
<삭 제>

평가 손실이 채권이자, 주식배 당, 비상장주식평가, 환차익 등 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 우

- (4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개인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개인 15.4% 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
-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 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 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 득세율(최고한도 세율 3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
-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 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 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 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 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 (최고 한도세율 22%)을 적용하 여 과세되며, 이전에 납부한 원 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.

- 15.4% 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
-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 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 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(이자소득과 배 당소득)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사업 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)과 합 산하여 개인소득세율(최고한도 소득세율 35%, 주민세 3.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
-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 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장 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 외)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 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 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 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 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 게 됩니다.

	(5) Class C<장기주택마련> 수익증권	(4) Class C<장기주택마련> 수익증권					
	에 대한 과세 中 <7년 이내에 중도						
	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>,	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>,					
	2009.09 기준	2010.02 기준					
	**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	 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					
	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	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					
	<u>습니다.</u>	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					
		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					
		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					
		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					
		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					
	※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	<u><</u> 삭 제> : 공모펀드 거래세 일몰					
	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						
	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						
	례제한법제117조에서 정하는 일정요						
	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						
	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						
	<u>니다.</u>						
	(4) 고리치 조치철교는 기시키세 네	(트) 권리가 조기됩니다 키시키게 레리					
	(<u>6</u>) 적립식 주식형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	(<u>5)</u> 적립식 주식형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					
	안 세세 에릭	- 직전 회계연도 (2009.12.18) 기					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		준으로 1. 재무정보, 2.연도별 설정					
세3구 설립구자기 의 세구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					
		용실적 갱신					
	기준일 : 2009.9.28 현재 / 설정액	<u> </u>					
	기준 / 단위 : 억원	기준 / 단위 : 억원					
	집합 주식형 <u>2,965</u>	집합 주식형 3,397		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	투자 채권형 <u>17,274</u>	투자 채권형 <u>17,337</u>					
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기구 증권 혼합형 1,434	기구 증권 혼합형 1,918					
中 '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	종류 파생상품 <u>22,852</u>	종류 파생상품 <u>19,753</u>					
사항', '라. 운용자산규모'	재간접 <u>2,965</u>	재간접 <u>467</u>					
	<u>부동산</u> <u>0</u>	부동산 <u>0</u>					

혼합자산	<u>0</u>
MMF	<u>1,334</u>
총계	<u>45,869</u>

혼합자산	<u>0</u>
MMF	<u>4,254</u>
총계	<u>47,126</u>
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中 '3. 집합투자 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', 가. 업무보고서, "(2) 자산운 용보고서"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 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,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 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.

-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 종료되는 날, 회계기간의 말 일,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 속기간 의 만료일, 해지일 또 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자산・부채 및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
-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 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 익사항
-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

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 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 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 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
-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 종료되는 날, 회계기간의 말 일,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 속기간 의 만료일, 해지일 또 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자산・부채 및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
-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 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 익사항
-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

의 비율 의 비율 ○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 ○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 의 총수,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 의 총수,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○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○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에 관한 사항. 다만,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, 6개월,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 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. ○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○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·국가 별 투자내역 ○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 금 내역(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 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) ○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○ 집합투자기구의 구조. 다만,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, 6개월,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 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. ○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 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 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○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中 '3. 집합투자 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', 가. 정기보고서, "(3) 자산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 탁업자는 <u>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</u> 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

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 탁업자는 <u>희계기간의 종료, 집합투</u> 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관·관리보고서" 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 다만 투자자 기재된 자산보관・관리보고서를 작 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 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 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 다. 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 1)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 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2)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)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 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-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(직전 회계년도 기준 : 2009.12.18)
- 작성기준일 변경(2009.9.28→2010.02.18)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개정
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[2010.1.1 시행]에 따른 과세에 관한 사항 반영

구분	정정전			정정후				
[표지] 4. 작성기준일	<u>2009</u>	년 9월 28일			2010년 2월 18일			
[표지] 5. 증권신고서 효력발생	<u>2009</u>	년 10월 15일]		<u>2010</u> է	년 2월 24일		
일								
	(<u>2009.09.28</u> 현재)				(<u>2010.02.18</u> 현재)			
	① 책임	임운용전문인	[력		① 책임운용전문인력			
		성명	박찬			성명	박찬	
		생년	1971			생년	1971	
	직위		팀장			직위	팀장	
Ⅱ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운용중인	<u>19개</u>			운용중인		
中 '6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		다른 집합				다른 집합	107	
항'	운용	투자기구			운용	투자기구	<u>19개</u>	
	현황	수			현황	수		
		다른 운용				다른 운용	10.04004	
		자산규모	<u>18,966억</u>			자산규모	<u>18,248억</u>	
	주요 운용경력 및		/ All 2 h		주요 운용경력 및		/취해기 가O\	
			<생략>			이력	<현행과 같음>	

Ⅱ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7. 투자실적 추이 (세전 기 준)'	<u>- 작성기준일 변경(2009.9.28→</u> 2010.02.18)에 따른 투자실적 추이 <u>개정</u>
Ⅲ. 매입. 환매관련 정보 中'1. 수수료 및 보수', (2)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 직전 회계연도 (2009.12.18) 기준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보수 및 비용[기타비용, 총보수 • 비용, 총보수 • 비용, 총보수 • 비용, 증권거래비용] 갱신
Ⅲ. 매입. 환매관련 정보 中 '2. 과세'	-조세특례제한법 개정[2010.1.1 시 행]에 따른 과세 관련 사항 반영 -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 법 개정 사항 반영
IV. 요약 재무정보	- 직전 회계연도 (2009.12.18) 기준 으로 요약 재무정보 갱신